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법·제도 동향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발표



개요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수행 후, 조사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외부감사법 제22조)

‘18.11

새외감법 시행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의무 신설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

‘19.12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모든 위반에 외부전문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오해와 기업부담 증가 우려에 따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23.07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1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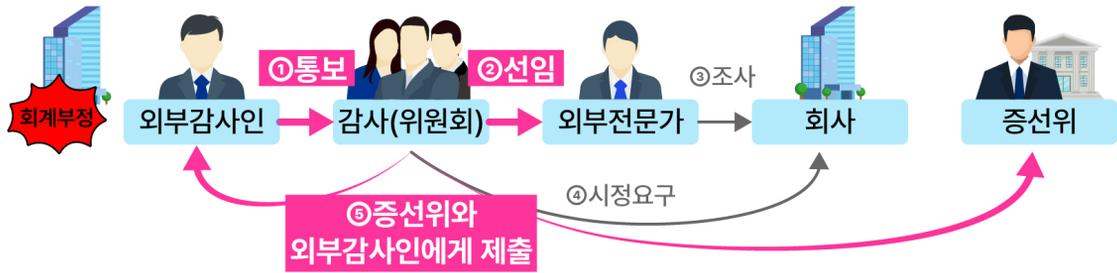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 독립성 확보 미흡 및 조사결과의 부실 보고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개요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新외부감사법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발생시 내부감사기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음

● 개정된 가이드라인



감사(위원회)의 역할

-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부정(의혹)에 대한 내용을 확인
- 경영진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의 수용여부에 따라 외부전문가 선임을 결정
- 경영진, 외부감사인과 논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조사 쏘 단계를 감독
- 조사결과와 경영진 시정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전달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배경

2018년 정부가 도입한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주요 개정사항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 포함 사항 정비



1.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회계부정’ 개념 구체화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보대상**에 포함



종전 가이드라인

①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개정 가이드라인

① (회계부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단순 오류는 제외됩니다.

*「상법」제401조의2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

I. 회계부정 통보대상 정비

회계부정 기준금액 명확화

회계부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은 회사 규모 관계없이 통보대상으로 함



종전 가이드라인

②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개정 가이드라인

② (중요성 판단) 위반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일정규모(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포함

II.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사항 신설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하여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 마련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함

개정 가이드라인(신설)

- ③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를 위하여 범무법인, 회계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직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으며,
-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부정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요건, 예를 들어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

1.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3.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III. 조사 및 시정조치 결과 포함 사항 정비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추가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서 부실 보고를 방지하기 위함

개정 가이드라인

㉔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및 회사 시정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예시)

추가된 항목

-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 및 통보내용
-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
-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임원, 경영진, 직원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 및 절차의 취약점과 해당 통제 및 절차의 위반 여부 식별
- 시정을 위한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 수정 및 인사 관련 조치
- 재발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활동 수정

부록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할 경우,
보고 및 후속 조치 진행 방안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음

특히 **회계부정에 대한 시정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감사위원회는
경영자에게 외부전문가 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상황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외부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상황 예시

-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본 카드뉴스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 하단의 **건의·문의** 탭을 통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